

(한국어 번역판)

ACIIA 윤리행동원칙

ACIIA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국제공인투자애널리스트협회

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alysis

※ 한국증권애널리스트회가 본 원칙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alysis 윤리 행동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서문(Preamble)

투자환경의 국제화가 진행되는 중에 ACIIA®(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alysts)은 전문적, 윤리적 지식과 실무에 대한 세계 공통 기준의 확립과 투자애널리스트(Investment Analyst)간의 정보교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ACIIA의 CIIA® 교육프로그램은 국가 또는 지역(National/Regional)마다 문화, 실무, 규제상의 차이가 있고, 시장참가자는 이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이념 하에 개발되었다. 동시에 CIIA 프로그램은 고도의 전문적, 윤리적 기준을 추구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장 간에 투자애널리스트간의 긴밀한 관계(Relationship) 및 이동(Mobility)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CIIA는 전문 능력 및 직업윤리가 전 세계 투자애널리스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투자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ACIIA는 각국 또는 지역 시장의 규모, 또는 발전단계의 차이를 불문하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애널리스트협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고, 그와 같은 점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다른 조직과는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ACIIA는 각국 또는 지역의 문화적(Cultural), 규제적(Regulatory) 측면을 존중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애널리스트가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요소를 보다 잘 이해하고, 맞지 않는 견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CIIA는 회원 간의 긴밀한 연대를 촉진하고 있고,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문적, 윤리적 실무가 융합되어 Best

Practice로 수렴되어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글로벌 CIIA 프로그램은 ACIIA가 채택한 공통의 원칙에 따라서 각국 또는 지역의 ACIIA 회원 협회에 의해 채택되고, 실시되고 있다. CIIA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또는 지역의 투자애널리스트를 대표하는 ACIIA 회원 협회의 민주적인 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것이고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CIIA 프로그램은 각국 또는 지역의 협회가 관리하는 국가 고유의 요소를 범위로 하는 시험과 ACIIA가 관리하는 2개의 Level (Foundation Level과 Final Level)으로 구성된 국제공통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ACIIA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Best Practice를 포함한 윤리행동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을 제정하였다. ACIIA는 각국 또는 지역의 협회가 본 원칙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윤리강령 및 기준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Model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원칙에서 투자애널리스트(Investment Analyst)라 함은 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 투자운용(Investment Management), 포트폴리오 운용(Portfolio Management),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 투자상담(Investment Counselling) 등의 직업행위 또는 이들과 유사한 직무의 일환으로서 재무, 경제 또는 통계 데이터를 평가하거나 사용하는 개인을 말한다.

ACIIA 윤리행동원칙은 투자애널리스트로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원리를 규정한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과 그 기본원칙을 투자애널리스트 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중요 원칙”(Specific Key Principles)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 또는 지역의 투자애널리스트 협회가 중요원칙의 실행에 있어서 채택해야 할 권장기준으로서 “주요 권장기준”(Key Recommendation)이 규정되어 있다.

ACIIA 윤리행동원칙은 투자애널리스트가 가장 고도의 윤리행동을 확

보호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주로 ACIIA의 각 협회의 회원인 투자애널리스트를 위하여 채택된 것이지만 투자애널리스트 전문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의 완전성(Integrity)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1. 정직(Honesty), 완전성(Integrity), 공정성(Fairness)

투자애널리스트는 고객(Clients), 미래의 고객(Prospective Clients), 그리고 기타 전문 업무에 관련된 자의 취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성실, 완전성, 공정성을 지키고, 투자애널리스트의 사회적 신용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적절한 주의 및 근면(Reasonable Care and Diligence)

투자애널리스트는 적절한 주의, 신중, 근면성을 가지고 전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고객이익의 우선(Interests of Client First)

투자애널리스트는 항상 고객 및 미래 고객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고객 및 미래 고객의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우선시해서는 아니 된다.

4. 독립성 및 객관성(Independence and Objectivity)

투자애널리스트는 전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5. 전문 능력(Professional Competence)

투자애널리스트는 전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6. 필요한 지식과 법규 준수(Required Knowledge and Compliance)

투자애널리스트는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Regulation 및 국가 또는 지역 협회의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 또는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고의로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B. 중요원칙(Specific Key Principles)

1. 합리적인 근거 및 공정한 표시(Reasonable Basis and Fair Representation)

원칙(Principles) :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리서치(Investment Research), 투자권유(Recommendations), 투자운용(Investment Management)을 함께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요 권장기준(Key Recommendation)

- a.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리서치, 투자권유, 투자운용을 함께 있어서 면밀하고 그리고 근면한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b.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예측(Forecast)은 예측으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 c. 분석은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오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d. 분석은 전문적인 근면성(Professional Diligence)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애널리스트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과 진실성(Truthfulness)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 평가, 증권 선정, 포트폴리오의 구축에 있어서 사용된 기본원칙과 방법 및 이들의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 및 리스크 요인(Risk Factors)은 모두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 f. 투자애널리스트는 구두(Orally) 또는 문서(Written)를 불문하고 투자성과를 보증 또는 보장(Assurance or Guarantee)하여서는 아니 된다.
- g. 투자애널리스트는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자명, 발행자, 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는 등 신중하고,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h.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리서치, 투자권유, 투자운용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적합성(Suitability)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권유 및 투자운용이 고객 및 잠재고객에 대하여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권장기준

- a. 투자애널리스트는 고객 및 잠재고객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인을 하고, 고객 및 잠재 고객의 Needs, 투자경험을 파악하여야 한다.
- b.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권유가 고객의 투자목적 및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c.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d.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권유가 특정 고객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B.2.c.에 규정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 자신이 당해 투자권유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실표시의 금지(Prohibition Against Misrepresentation)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전문 업무에 대하여 부실표시를 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실은 모두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 권장기준 :

- a. 투자애널리스트는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 업무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b. 투자애널리스트는 고객 및 잠재고객에 대하여 투자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익상반의 방지 및 공시(Prevention and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s)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이익상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요 권장기준

- a. 투자애널리스트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모든 고객, 잠재 고객 및 고용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b. 투자애널리스트는 전문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압력을 받은 경우 자기의 감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c. 투자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의 증권을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와 같은 보유가 조사의 객관성(Research Objectivity)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공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d. 투자애널리스트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자기 또는 고용주의 거래에 우선하여 고객 및 잠재고객이 당해 투자권유에 근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 e. 투자애널리스트는 명확한 개인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고용주가 정한 공시 절차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회사가 공표한 투자권유와 부합되지 않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f. 투자애널리스트는 고객 및 잠재고객의 거래를 자기 또는 고용주의 거래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보상(Compensation)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요 권장기준 :

- a. 투자애널리스트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자기 회사 이외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Monetary Compensation) 또는 기타 이익(Benefit)은 고객, 잠재고객 및 고용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b. 투자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담당하는 발행회사로부터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선물(Gifts) 또는 기타 이익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고객의 공평한 취급(Fair Dealing with Clients)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 권유의 전파(Investment Recommendation Disseminating) 및 투자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고객 및 잠재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7.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Prohibition Against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금융상품의 발행자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에 근거한 거래, 당해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전달 또는 당해 정보를 투자분석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전문자격의 적절한 사용(Proper Use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자기의 자격 및 관계된 협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당해 자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권장기준 :

투자애널리스트는 전문 업무에 있어서 CIAA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격 및 관련된 협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고객의 비밀보장의 유지(Preservation of Client Confidentiality)

원칙 : 투자애널리스트는 고객 및 잠재고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ACIIA 윤리행동원칙 일람

ACIIA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AT A GLANCE

A.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투자애널리스트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 A.1 고객(Clients), 미래의 고객(Prospective Clients), 그리고 기타 전문 업무에 관련된 자의 취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성실, 완전성, 공정성을 지키고, 투자애널리스트의 사회적 신용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A.2 적절한 주의, 신중, 근면성을 가지고 전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A.3 항상 고객 및 미래 고객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고객 및 미래 고객의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우선시해서는 아니 된다.
- A.4 전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A.5 전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 A.6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Regulation 및 국가 또는 지역 협회의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 또는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고의로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B. 중요원칙(Specific Key Principles)

투자애널리스트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 B.1 투자애널리스트는 투자리서치(Investment Research), 투자권유(Recommendations), 투자운용(Investment Management)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한 표시를 하

여야 한다.

- B.2 투자권유 및 투자운용이 고객 및 잠재고객에 대하여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B.3 전문 업무에 대하여 부실표시를 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실은 모두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B.4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이익상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B.5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B.6 투자 권유의 전파(Investment Recommendation Disseminating) 및 투자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고객 및 잠재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B.7 금융상품의 발행자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에 근거한 거래, 당해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전달 또는 당해 정보를 투자분석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B.8 자기의 자격 및 관계된 협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당해 자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B.9 고객 및 잠재고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